

92mm

92mm

www.mw.go.kr

2012년에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1.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 기준이 기존 130%에서 185%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2. 탈수급시 교육·의료급여가 2년간 연장 지원됩니다.

희망키움통장 가입자나 취업성공패키지·희망리본사업 참여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을 초과(150% 이하)한 경우에도 교육과 의료 지원을 2년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. 수급자 급여가 압류되지 않습니다.

기초생활급여를 '행복지킴이 통장'을 통해 받으실 경우 수급자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.

“보건복지부는
항상 국민과 함께 합니다.”

희망을 키우세요!!
국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
 **보건복지부**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

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

MINISTRY OF
HEALTH & WELFARE

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?
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?
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○ 위기사유 |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·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- 단전 1개월 경과 시
 - 주소득자의 휴·폐업(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, 소규모 제조·도매업자), 실직(고용보험 미가입자 등)으로 생계유지 곤란
 - 출소 후(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) 생계 곤란, 거소 없는 경우
 - 가족으로부터 방임,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(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)

○ 소득·재산기준 |

- 소 득 : 최저생계비 150% 이하 (단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)
- 재산기준 : 대도시 1억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
- 금융재산 : 300만원 이하 (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)

※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



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.

- 주소지의 시·군·구청
- 보건복지콜센터 : 국번없이 129 (www.129.go.kr)

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종 류	지 원 내 용	지원금액	최장횟수
생계지원	•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최고 1,009천원 (4인기준)	6회
의료지원	•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)	300만원 이내	2회
주거지원	• 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	555천원 (대도시, 4인기준)	6회
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	•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	1,251천원 (4인기준)	6회
교육지원	• 초·중·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	초 191천원 중 304천원 고 373천원 및 수업료·입학금	2회
그밖의 지원	•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- 통절기(10~3월) 연료비 : 83천원 - 해산비·장제비·전기요금 : 50만원 (1회) ※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(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		1회 (연료비 6회)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• 상담 등 기타 지원		횟수 제한 없음

※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

긴급지원 흐름도



※ 부정수급...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

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민 여러분 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.

MINISTRY OF
HEALTH & WELFARE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?

- 근로능력 여부·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.
- * 최저생계비란?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,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
- 다만,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누가, 어디서 신청하나요?

- 수급권자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 구비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기타 소득·재산관계 서류 등
-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추가조사 필요시 30일)에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며,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해드립니다.
- * 결정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해드리며,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* 부양의무자의 범위
 - ▶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)
- * 부양능력 판정기준
 - ▶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·재산기준에 의거 결정
 - ▶ 수급권자가 노인(65세 이상), 장애인,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존 130%에서 185%로 완화하여 적용함
- *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표

구 분	일반수급자 가구	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
부양능력 없음	B의 130% 미만	B의 130% 미만
부양능력 미약	B의 130% ~ (A+B)의 130%	B의 130% ~ (A+B)의 185%
부양능력 있음	(A+B)의 130% 이상	(A+B)의 185% 이상

* A :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, B :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

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사례

- 1인가구가 수급자 신청을 하고,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4인가구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☞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266만원 미만(단, 194만원까지는 부양비 산정)
 - 노인(65세 이상), 장애인, 한부모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379만원 미만(단, 194만원~379만원까지는 부양비 부과)
- ☞ 재산기준 :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이 1억 5,363만원 미만
 - * 중소도시(1억 2,913만원), 농어촌(1억 2,213만원)

- *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 - ▶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
 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
* 최저생계비(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)		(단위 : 원)				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011년	532,583	906,830	1,173,121	1,439,413	1,705,704	1,971,995
2012년	553,354	942,197	1,218,873	1,495,550	1,772,227	2,048,904

소득인정액 산정 사례

- 소득 : 할아버지 근로소득 20만원, 할머니 장애수당 5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
- ☞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(25만원) - 가구특성별지출비용(5만원) = 20만원
- 재산 : 농어촌 거주 일반재산 3,800만원, 금융재산 500만원, 부채 500만원인 경우
- ☞ 일반재산 : (재산 3800만원 - 기본재산액(농어촌) 2,900만원 - 부채 500만원) × 0.0417 = 16만7천원
- ☞ 금융재산 : (재산 500만원 - 생활준비금 공제 300만) × 0.0626 = 12만5천원
- ⇒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20만원 + 재산의 소득환산액 29만2천원 (일반 16만7천원 + 금융 12만5천원) = 49만2천원

소득인정액과 상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-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·주거·의료·자활·교육·해산·장제급여가 있습니다.
- 생계·주거급여 = 현금 급여기준액 - 소득인정액

* 2012년도 현금급여 기준(소득인정액이 없을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) (단위 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011년	436,044	742,453	960,475	1,178,496	1,396,518	1,614,540
2012년	453,049	771,408	997,932	1,224,457	1,450,982	1,677,506

사 례

- 부양의무자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50만원 4인가구의 경우
- ☞ '12년 현금급여 기준 72만4천원 지급(1백22만4천원 - 50만원)
- 생계·주거급여 이외의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
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?

- 수급자는 거주지역, 세대구성, 부양의무자, 소득, 재산,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매년 상·하반기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.
- 확인조사 결과 소득,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중지 또는 급여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,
-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* 사위(詐僞)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)

기초생활수급자 이행급여 특례 안내

-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취업 성공패키지·희망리본사업 참여로 취·창업에 성공한 자의 근로·사업 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150% 이하인 경우 탈수급 촉진을 위해 2년간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지급
- 2011년에 취업에 성공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자격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.
- 2012년도 이행급여지급 소득인정액 상한선 기준 (단위 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최 저 생계비	553,354	942,197	1,218,873	1,495,550	1,772,227	2,048,904
소 득 인정액 상한선	1,413,296	1,828,310	1,828,310	2,243,325	2,658,341	3,073,356

* 1·2인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%를 적용

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

-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: 생계·주거급여, 기초노령연금, 장애연금, 장애(아동)수당만 입금이 가능하고, 그 외에는 입금이 차단되어 압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통장(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는 통장임에 주의)
- 시중은행·우체국·신용협동조합·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
-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

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는 무엇이 있나요?

구분	지원내용	지원기관
각	● 주민세 비과세 (개인균등할 비과세)	시·군·구에서 일괄 면제
	● TV수신료 면제 (월 수신료 면제)	한국전력공사(☎123)
	● 전기요금 할인 (월 8,000원)	한국전력공사(☎123)
	●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	읍·면·동
종	● 복지전화서비스 <유선전화> - 가입금, 이전비 및 월기본료 면제 - 시내,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-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% 감면 (월 1만원 범위) <이동전화> -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% 감면 - <인터넷 접속 서비스> - 월 접속료 30% 감면	통신업체에 직접 신청
감		
면		
제		
도	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검사수수료 면제	교통안전공단
	● 기타,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,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	지자체별 지원
	● 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	읍·면·동 (주거복지담당자)
	● 법률구조제도 - 민사, 가사, 형사, 행정소송, 헌법소원사건	법률구조공단 (☎132)
기	● 신용회복지원제도	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
타	● 개인파산·회생 소송구조 제도	대법원(www.scourt.go.kr)
복		
지		
서		
비		
스		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.
●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● 보건복지콜센터 : 국번없이 129 (www.129.go.kr)